

5.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(안) 입법예고

건설교통부공고제1999-230호 1999. 7. 14.

계정 이유

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시 전국평균지가변동률 대신 당해 시·군·구 지가변동률을 적용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 골자

- 가. 개발부담금 산정시 정상지가 상승분은 전국의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에금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의 산정을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당해 시·군·구의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정기에금이자율을 적용토록 함.
- 나. 사업시행자가 조합인 경우 종전에는 조합이 해산한 경우에 한하여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앞으로는 조합이 해산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합원에게 부담금을 부과·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.

주택회보